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- 1051호

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(개정사항) 공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2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)」 제34조제2항,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) 제93조제4항에 따라 "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(개정사항)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6. 30.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정목적

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 자료 제공

2. 적용일시 : 2017년 7월 1일부터

3. 적용범위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
4. 개정내용

“붙임 자료 참조”

5. 표준품셈 관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(☎031-910-0421, 0423)

6. 기 타

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/공지사항)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(www.kict.re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*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